

## 〈조합원 제명 규약〉

거거명협동조합 총회 승인 (2024 년 3 월 26 일)

### 제 1 조(목적)

이 규약은 협동조합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 2 조(적용범위)

조합원 제명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.

### 제 3 조(용어의 정의)

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제명”이라 함은 협동조합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조합원”이라 함은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. 이때,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 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.
3. “조합원의 지위”라 함은 조합원으로서 갖고 있던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.

### 제 4 조(제명)

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.

1. 1 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
2.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, 공급물자 대금 또는 이용료의 지불을 태만하거나 최고를 받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3.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한 경우
4. 불명예 또는 불미스러운 조합원의 경우

② 조합은 제 1 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 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③ 제명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당사자의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과 주소
2. 제명의 사유
3.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 기한
4. 그 밖에 제명 통지에 필요한 사항

④ 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르지 않은 제명 의결을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
### 제 5 조(제명 당사자 의견제출 등)

제명 당사자의 의견제출 처리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.

1.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을 조합에 제출할 수 있고, 증거자료를 첨부한다.
2. 의견이 구술로 제출된 경우에는 그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.
3.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4. 당사자가 의견진술을 통지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고, 제명 총회 당일에도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명 처리에 당사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.

### 제 6 조(제명의 취소)

조합은 제명 당사자에게 통지한 후 다음 각 호의 경우가 발생하면 제명 통지를 취소할 수 있다.

1. 조합의 명백한 오류로 인해 조합원에게 잘못 통지된 때
2. 경비 및 이용료, 회비 등에 대한 사항을 시정한 경우
3. 기타 총회의 결의로 제명이 취소된 때

제 7 조(제명 조합원 출자금 환급)

제명된 당해연도의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되는 정기총회 때 의결한다.

제 8 조(기타 제명에 관한 사항)

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회에서 정할 수 있다.

부칙

제 1 조(시행일)

이 규약은 협동조합 내에서 한하며 총회 의결된 시점부터 시행한다.

